

2025년도 한국중부발전 4직급 직원 채용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제공 안내

1 편의지원 제공 대상

- ☐ 「2025년도 제2차 4직급 신입직원 채용공고」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자 중, 지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결정된 자로서,
 - 시각·지체·뇌병변·청각장애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
- ☐ 기타 특수·중복장애, 일시적 장애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애 있는 자로서 편의지원 제공이 필요한 사람

2 편의지원 제공 신청방법

- ☐ 편의지원 신청은 입사지원서 작성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사지원서 작성 시 편의지원 제공 신청

- ① 편의지원 제공 안내문 확인
- ② 장애유형별 장애정도에 따른 편의지원 신청 (→ 입사지원서 작성 시 대상자 표기)
- ③ (필요시) 구체적인 내용 기재
- ④ 진단서 등 증빙서류 제출 (→ 입사지원서 작성 시 증빙서류 업로드)
 - ※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참고 1)” 및
“의사진단서 발급 시 유의사항(참고 2)” 확인 철저



신청 내역 및 증빙서류 검토



결과 통보(메일 또는 문자 등 별도안내)

3 편의지원 제공 신청 시 유의사항

-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참고 1)에서 본인의 편의제공 대상 여부, 편의지원 신청 가능 내용 및 증빙서류 필요여부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상이등급자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정도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 유형과 정도에 해당하는지 참조한 후, (참고1)의 편의지원 내용과 증빙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의사 진단서에 해당 장애유형과 정도 기재)
- 시험시간 연장 등의 편의지원을 신청한 수험생은 신청화면 하단의 입력란에 ①본인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②지원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내용과 필요성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 장애인 구분 모집단위가 있는 분야에서는 장애인 모집단위에서만 시험시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 의사진단서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해당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받은 원본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참고 2 발급일 및 발급 내용 확인)
 - ※ 다만, 임신부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나 임신사실확인서도 인정됩니다.
 - ※ 해당지역의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 해당 여부 및 소재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병원·약국 찾기]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반드시 병원 확인 후 발급)
- 편의지원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한국중부발전(주) 채용담당자(☎ 070-7511-1217, 1212)

참고 1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

장애유형 및 정도			필기시험		비고
			편의지원 내용	증빙서류	
지체 장애인	상지	공통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시험시간 연장(1.5배)	의사진단서 (원본)	기존 1~3급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 가능	-	기존 4~6급
	하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	·휠체어 전용책상(휠체어 사용자)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기존 1~6급
뇌병변 장애인	공통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휠체어 전용책상(휠체어 사용자)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시험시간 연장(1.5배)	의사진단서 (원본)	기존 1~3급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시간연장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기존 4~6급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	-	
시각 장애인	공통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시험시간 연장(1.7배)	의사진단서 (원본)	기존 1~2급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이거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시험시간 연장(1.5배)		기존 3급 1,2호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시험시간 연장(1.5배)		기존 4급 2호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기존 4,5급 1호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이고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 이하인 사람	·시험시간 연장(1.5배)		기존 6급 중 좋은 눈 시력 0.3 이하
		위 조건 외의 시각장애인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 가능	-
	청각 장애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		·수화통역사 배치·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기타	특수 및 중복장애·일시적 신체장애		·장애정도를 검토하여 결정	검토 후 안내	-
	임신부		·높낮이 조절 책상 ·시험 중 화장실 사용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의사소견서 또는 임신사실확인서 (원본)	-
	과민성 대장·방광증후군		·시험도중 화장실 사용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의사진단서 (원본)	-

※ 확대문제지: A3 규격의 118%(14point), 150%(18point)로 확대된 2종류 중 택1

※ 확대답안지(선택형시험): A3 규격의 표기형과 기입형 2종류 중 택1

※ 상이등급자는 장애인복지법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에 해당하는지 확인

※ 해당 항목의 장애유형(기등급 등)의 조화·확인이 어려울 경우 진단서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장애유형 및 정도			면접시험 편의지원 내용	증빙서류	비고
지체 장애인	상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전담도우미 지원 ·관련서식 확대 제공	-	기존 1~6급
	하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전담도우미 지원 ·휠체어 전용책상(휠체어 사용자)	-	기존 1~6급
뇌병변 장애인	공통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전담도우미 지원 ·관련서식 확대 제공	-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면접시간 연장(5분)	의사진단서 (원본)	기존 1~3급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시간연장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기존 4~6급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	-	
시각 장애인	공통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전담도우미 지원 ·관련서식 확대 제공	-	-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관련서식 지원	의사진단서 (원본)	기존 1~2급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기존 3급 2호 4급 2호 (점자-필요)
	위 조건 외의 시각장애인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 가능	-	-
청각 장애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		·면접시간 연장(5분)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관련자료 등 서면제공	의사진단서 (원본)	기존 2~6급
기타	특수 및 중복장애·일시적 신체장애		·장애정도를 검토하여 결정	-	-
	임신부		·높낮이 조절 책상 ·전담도우미 지원	의사소견서 또는 임신사실확인서 (원본)	-

※ 면접시간 연장(5분) 등을 위한 편의지원은 종합병원 의사진단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제공여부를 결정
하므로 진단서 원본 제출 필요(종합병원 이상)

참고 2

의사진단(소견서) 발급 시 유의사항 [해당 응시자]

□ 발급기관 :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

- ※ 반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의 [병원·약국찾기] 서비스에서 조회 후 해당되는 병원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 의사진단서가 아닌 입원·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통원)치료확인서 등은 증빙서류로 불인정
- ※ 임신부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및 병원급 의료기관이 발급한 의사소견서 또는 임신사실확인서로 증빙 가능

□ 발급일자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원본)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유효 진단서 발급일
2025년 7월 3일	2023년 7월 4일 이후

□ 의사진단서 발급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아래 3가지)

- ① 장애유형 및 정도 등에 대한 구체적 진술(시각장애의 경우, 시력 또는 시야각 명기)
- ②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
- ③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

-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편의지원 내용을 참조하여 제공받고자 하는 항목을 모두 기재

예시) 시험시간 연장을 신청할 경우

⇒ 편의지원 필요성 인정내역 : 시험시간 연장

- 원서접수 시 신청내용과 의사진단서 기재내용이 다를 경우 의사진단서에 의함
- 임신부 응시자의 경우에도 임신주수, 신청할 편의제공 내용과 그 필요성이 모두 기재되어야 함

<의사진단서 발급내용 “예시”>

장애유형 및 정도		예 시	※ ①~③ 반드시 기재
시각 장애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① 장애유형 및 정도 : 시각장애 정도가 심한 자 - 시력/시야 : 좋은 눈 0.07,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 ② 시험관련 불편사항 : 시험 시 문제 판독에 확대 자료가 요구됨 ③ 편의지원 필요성 인정내역 : 시험시간 연장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① 장애유형 및 정도 : 시각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 시력 : 나쁜 눈 0.02이하, 좋은 눈 교정시력 0.3이하 ② 시험관련 불편사항 : 시험 시 문제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마킹이 어려움 ③ 편의지원 필요성 인정내역 : 시험시간 연장	
뇌병변 장애인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① 장애유형 및 정도 : 뇌병변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 증상 : 상지의 수의적 근육조절능력 손상 ② 시험관련 불편사항 : 시험 시 문제 필기속도가 느리고 미세한 글씨쓰기 및 답안마킹이 어려움 ③ 편의지원 필요성 인정내역 : 시험시간 연장	
기타		① 장애유형 및 정도 : 특수 및 중복장애 보유자 - 증상 : 편안 약시와 無수정체안으로 인한 눈의 운동장애 ② 시험관련 불편사항 : 시험 시 문제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마킹이 어려움 ③ 편의지원 필요성 인정내역 : 시험시간 연장(단, 장애판정을 받은 자에 한함)	

※ 시험시간 연장 등 내용이 포함될 경우 반드시 종합병원 의사진단서 제출(소견서 불인정)